**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유라클과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식회사 유라클의 경영 활동상 의사결정 및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해관계자와 거래를 해야 할 경우의 그 절차를 아래에 정한다.

**제 2조 (적용범위)**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관련 법규정에 따른다.

**제 3조 (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을 대상으로 한다.

(가) 「이해관계자」란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사 또는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회사를 말한다.

1. 「최대주주」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 및 그 특수 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
2. 「주요주주」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 증권을 소유한 자와 임원의 임면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3.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관계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 4조 (거래의 범위)**

이해관계자 거래의 유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매출/매입 거래
2. 부동산 구입/처분
3. 용역 거래
4. 대리 및 임대차
5. 연구개발의 이전
6. 대여와 출자를 포함하는 금융거래
7. 담보/보증
8. 경영계약 및 기타의 거래

**제 5조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거래는 제4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그 거래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사전에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는 참석 이사들에게 그 거래의 객관성과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참석 이사들의 만장일치 결의를 얻어 그 거래를 집행한다.

**제 6조 (이사회의 필수 내용)**

이해관계자 거래의 이사회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특수관계의 성격(특수관계의 이해에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명단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이사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여야 한다.
2. 거래명세(대가가 없거나 소액의 거래와 거래의 재무제표에 대한 영향을 이해 하는 데 필요한 기타의 정보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회사의 회계 관리자가 이사들에게 그 설명을 하며, 이에 대해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득하여야 한다.
3. 가격정책, 결제조건 등의 거래조건(거래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의 효과를 표시한다)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이사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결의를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득하여야 한다.

**제 7조 (이사회를 불요로 하는 거래)**

이해관계자거래에서 다음 각 호는 이사회의 결의를 행하지 아니한다.

1. 경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매입 거래
2. 경상적인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보수/비용

**제 8조 (거래가격의 적정성)**

이해관계자와의 모든 거래는 독립된 제 3자와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가격 산정이 어려울 경우 거래의 정당성을 위해 이사회는 외부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평가를 의뢰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